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61
----------	----

제출년월일 : 1999.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시설의 설치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환경보전 및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매립장설치로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 결정방법(안제3조)
- 나. 주변영향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 근거 및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규정과 사용처 명시(안제5조)
- 다. 시설의 운영 및 피해발생시 군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여건 명시(안제7조)
- 라. 시설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도모(안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기간('99. 1. 21-2.10)중 의견 - 별첨
-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시설의 설치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환경보전 및 군민 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환경성 검토서를 참고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하는 4개 읍·면이상이 공동사용하는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매립면적 8천㎡이상 1일소각능력 1톤이상에 적용된다.

제4조(지역개발에의 반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5조(주민지원 기금의 조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출연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사용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조성된 지원기금은 일정액 이상 적립후엔 매립장 조성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

④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는 영제26조를 준용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 주민중 의회와 군수가 각각 2인을 선정
2. 인접 읍·면이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별로 주민 1인씩을 의회와 군수가 각각 선정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을 포함 10인이 달할 때까지 지역에서 추천

②군수는 다음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③주민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과 군수간의 합의에 의한다.

④주민협의체의 운영은 영제18조를 준용한다.

제8조(예상피해에 대한 분쟁의 조정) 군수는 제3조의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부지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진입로 설치로 생활기반이 상실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영 제15조에
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발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예상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또는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별로 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등을 감시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및 수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법9조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1. 매립량이 1일 300톤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5조 (시설부주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등)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고시일 현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3. 세입자

②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1년이상 거주한 자와 제1항 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중 3년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1세대당 1천만원의 이주 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1년미만 거주한 자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3년미만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를 지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이주예정일 6월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은 별표2와같다.

②

제20조 (환경상의 영향기준) ①법 제1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상 영향기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직접영향권 : 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당해 시설의 규모, 지형적여건, 기상여건 및 지역주민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영향권 :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의 지역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직접영향권지역의 토지매수등)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등)①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총액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⑤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주변영향지역지원등) ①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지원사업의 종류중에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직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29조(주민감시요원의 자격요건)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평 창 군

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0374-330-2332 / 전송 (0374)330-2334
처리부서 : 환경복지과 환경시설담당 (본청1층) / 과장 김용수 담당 김비호 실무자 김재열

문서번호 환복 67511-

시행일자 1999. 2. . (년)

(경유)

수신 내 부 결 재

참조

취급		군 수
보존	년	김비호
부군수		
과 장	전 결	김재열
담 당		
기안		협조

제목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우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코저하는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공고기간 : '99. 1. 21 - 2. 10 (20일간)
- 공고장소 : 군보 및 읍면게시판
- 주민의견 : 접수 1건

일련 번호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성명	주소		
1	이창균 전대청	미탄면 백운리 대표 미탄면 번영회장	백운리 소재한 매립장도 이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3조의 적용범위를 삭제 요청	매립장의 광역화추진을 위한 제정취치와는 부합되지 않음으로 의견수렴 자구수정이 어려움
2	자체 자구수정 의견		폐촉법령의 준용규정항목을 삽입 필요	

평 창 군 수